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1. 제안이유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금천문화재단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계획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

2. 추진근거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1)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평가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기관, 대표이사)

나. 평가 내용

- 1) 금천문화재단(2024년도 실적) 기관 경영평가
- 2) 금천문화재단(2024년도 실적) 대표이사(4기) 성과평가
 - ▶ 경영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후,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

다. 평가 방법 : 외부 전문기관 용역(수의계약)

- 1) 소요예산 : 16,000천원(구비)
- 2) 용역기간 : 2025. 2월 중 ~ 6월 중(약 4개월)

3. 평가일정표



4. 참고사항

가. 2025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지표(요약표) - [붙임1]

나. 2025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요약표) - [붙임2]

다. 관계 법령 - [붙임3]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6조

[붙임1]

☐ 금천문화재단 「기관」 경영평가 지표(안)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경영관리 (58점)	리더십 (14점)	1. 경영층의 리더십	6.00	정성
		2. 전략 및 혁신	8.00	정성
	경영시스템 (26점)	1. 조직·인사관리	9.00	혼합
		1)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5.00	정성
		2) 지원기능인력 비율	1.00	정량
		3) 관리직 비율	1.00	"
		4)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1.00	"
		5) 임·직원 교육실적	1.00	"
		6) 채용비리 방지(감점)	△1.50	"
		7)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감점)	△1.00	"
		2. 윤리경영	4.00	정성
		3. 재무관리	13.00	혼합
		1) 재무관리의 적정성	6.00	정성
		2) 자체수입률	1.00	정량
		3) 일반관리비 충당률	1.00	"
	4)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1.00	"	
	5)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1.00	"	
	6) 조달계약실적	1.00	"	
	7) 인건비 인상률 준수	1.00	"	
	8)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1.00	"	
일자리확대 (3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3.00	혼합	
사회적 책임 (15점)	1. 소통 및 참여	4.00	정성	
	2. 재난·안전관리	4.00	정성	
	3. 안전사고 건수	1.00	정량	
	4. 지역상생 발전	6.00	혼합	
경영성과 (42점)	주요사업 (7점)	1. 사업성과 적절성	7.00	정성
	경영효율성과 (30점)	1.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	4.00	정량
		2. 전시관람용 공간 가동실적	4.00	"
		3. 문화예술 향유실적	4.00	"
		4. 문화예술 지원실적	4.00	"
		5. 문화복지 실적	3.00	"
		6. 문화예술 교육실적	3.00	"
		7. 문화교류 실적	3.00	"
		8. 도서관 운영 활성화	5.00	"
	고객만족성과 (5점)	1. 고객만족도 조사	5.00	"
계			100.0	

[붙임 2]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지표(안)

구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방법	배 점	비 고
기반과제	리더십	리더십	기관 평가 연동	30.00	기관 경영평가결과 점수 환산
		전략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20.00	
		재무관리			
성과과제	경영성과	사업성과관리		30.00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20.00		
		사회적 책임			
가점 및 감점사항	가점	정부부처, 광역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증 및 표창 수상	기관 표창	정량	+1.00 (건당)
			개인 표창	정량	+0.50 (건당)
	감점	사회적 물의 보도	정량	-1.00 (건당)	

평가등급 부여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평 점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 상기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지표는 2024년 실시한 2025년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편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며, 용역 착수 후 지표세부내용(지표별 정량 혹은 정성평가, 배점조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6조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6조(평가의 활용)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